	<b>보도자료</b> <b>2010년 6월 23일 (수)</b>	<b>청와대</b> <b>대변인실</b>
	2010년 6월 23일 11: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 당

##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 개최

- 6월 23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(위원장 강만수) 제22차 회의가 개최되었음
- 이번 회의에서는 「도로사업 효율화 방안」과 「전시·회의산업 발전 방안」이 논의되고 「제10차 기업현장으로 개선 활동」을 보고 받았음

### <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>

- ◇ 「도로사업 효율화 방안」은 앞으로 도로사업 추진이 도로의 양보다는 도로의 질 제고와 효율적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됨
  - \* '00~'09년간 고속국도 연장 77.2% 증가 : 2,131km('00) → 3,776km('09)
  - \* '00~'09년간 일반국도 연장 11.3% 증가 : 12,413('00) → 13,819km('09)
- 도로 등에 대한 중복·과잉투자는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등 예산 낭비는 물론 자연경관 훼손 및 주민생활 침해 등 문제를 야기
  - \*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도로투자계획 이외에 지역개발 관련사업이 매년 관례적으로 추가 ('10년 설계·건설 중인 2,821km 중 21%(580km)는 국회에서 반영(총사업비 3.9조원)
  - \*\* '00~'06년 개통된 도로의 교통량 오차가 평균 20% 수준
-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에 역행
  - \* 도로는 철도에 비해 11배 가량 많은 에너지를 사용 (우리나라는 도로위주 수송분담 체계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교통부문 배출의 94%차지)
  - \*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철도·해운·수자원 투자 등을 확대하고 도로투자는 기능 효율화에 역점

-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중복·과잉투자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  - \* 일본은 92년 이후 10년간 공공부문 투자(약 136조엔)의 43%인 59조엔을 사회간접투자에 지출하여 비효율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
  - \* 일본 국가채무(IMF 10.4월, GDP 대비 %) : 2010년 227%, 2015년 250%
-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잉 투자가 당대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, 증가하는 유지·관리 비용으로 미래 재정 운영에도 부담
  - \* 도로 유지보수비 1.4배 증가 : 17,607억원('00) → 24,842억원('09)
- 도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절감된 재원을 효율성 높은 다른 부문에 투자
  - 도로사업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도로투자 계획간 연계, 설계기준 유연화, 투자평가 강화, 관리체계 선진화 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도로 건설을 추진
- ◇ 「전시·회의산업 발전 방안」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시·회의산업을 육성하여 교역확대, 내수진작, 일자리 창출 및 관광수지 개선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
  - \* 독일은 전시산업이 GDP의 약 1%(250억유로, 40조원)를 차지하고 있으며,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(하노버 무역전시회가 대표적)
- 전시회, 국제회의 등은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고 해당분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자 국가브랜드 제고 기회
  - \* 라스베가스는 세계 최대인 “국제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(CES, The Int'l Consumer Electronics Show)” 개최로 “도박의 도시”에서 대표적인 전시회 중심 도시로 부상
  - \* 인구 1.3만의 스위스 시골 도시 다보스(Davos)는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 개최로 대표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탈바꿈
- 아시아 지역이 세계 전시·회의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최근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와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전시·회의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
  - \* 우리나라는 1일 비즈니스권인 반경 1,200km내 7억명의 인구가 밀집
  - \* '97~'07 전시산업 성장률 : (세계) 8.3% (아시아) 11.9% (한국) 10.3%
  - \* '97~'07 회의산업 성장률 : (세계) 3.8% (아시아) 6.3% (한국) 9.6%

○ 글로벌 수준의 전시·국제회의 육성·지원, 국내산업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, 지방 유휴 전시·회의시설 활용 및 전시·회의 산업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

- '15년까지 전시를 통한 수출창출 연간 600억불, 국제회의 참가자 연간 100만명 달성을 목표

- 부족한 전시·회의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전시·회의 중심축으로 육성

\* 코엑스(서울)-킨텍스(경기)-송도컨벤시아(인천)를 잇는 전시·회의 3각축 구축

- 글로벌화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 및 대규모 국제회의를 선정·육성하고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을 전개

-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거래와 기존 상권 활성화에 기여

\* 기존 상권과 전시회간 연계: 동대문시장-섬유·패션, 이태원-여행·음식 및 세계문화교류 장터, 남대문-생활용품, 용산상가-전자산업 등

\* 지방 유휴 전시시설을 소상공인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산업 및 관광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

- 전시·회의 참가자 편의 제고를 위한 통합카드 개발,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, 법령정비 등 지원체제 효율화, 전시·회의 및 관련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MICE복합지구 도입 등 추진

\* 카드 한장으로 교통·관광·숙박·쇼핑 통합이용 및 전시·회의장 인근상가 할인혜택 제공

◇ 「제10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 활동」에서는 '수도권 자연보전 권역내 공장 증설 등의 입지관련 인허가 기준 개선' 등 2010년 4~6월중 검토한 85건의 기업 애로사항중 72건의 개선 내용을 보고

○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및 고용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및 연수시설에 대한 증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활동 애로해소 현황을 보고

□ 첫 번째 안건으로 「도로사업 효율화방안」에 대해 논의

○ 도로는 그간 국토경쟁력 향상,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

○ 그러나, 도로사업 추진시 양적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, 중복·과다투자,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권 단절 등 부작용 초래

- 특히, 지속적인 도로투자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등 고정적인 사후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 증대

\* '95~'09년간 도로 유지보수비 1.4배로 증가(17.6 → 24.8천억원)

※ 일본의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확대의 부작용

· '92년이후 10여년 간 수요진작을 위해 과도한 공공투자를 추진하여 심각한 재정악화 초래('09년말 GDP대비 국채 192.9%, 재정적자 △7.2%)

○ 이에 따라, 신규사업 억제, 완공위주의 투자 등으로 재정투자를 절감하면서, 기존 도로의 효율적 이용 및 도로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

(1) 종합계획과 도로계획간 연계를 통해 사업간 정합성 제고

○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높이고, 각종 개발사업과 부합하는 「도로정비기본계획」 수립

○ 도로, 철도 등 교통수단별 투자계획간 시행시기, 우선순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교통수단별 투자계획 조정 강화

\* 「국가기간교통망계획」에 교통수단간 연계성 목표 지표를 개발하여 반영

○ 기능별 특성, 도로서비스 수준에 따라 국도·지방도 등 도로등급을 재조정하고, 국도·지방도 등을 통합하여 「국가도로망계획」 수립

\* 국가도로망계획(신설, 20년) → 도로정비기본계획(10년) → 중기투자계획(5년)

○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「도로정책심의회」의 심의절차 정례화 및 심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심사·조정기능 강화

(2) 도로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설계속도 기준을 유연화

- 기존 도로시설의 단순 용량확대를 지양하고, 2차로 우선 완공 후 교통량 변화에 따른 추가 2차로 확장 등 단계적 도로건설 및 기존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2+1차로제 운영 등으로 효율적 이용 도모
- 자연경관, 집단취락 등 지형여건에 따라 도로설계기준을 세분화·구체화하고 친환경 사업방식으로 경관도로 건설
  - \* 지형조건(지방) 세분화 : 평지/산지 → 평지/구릉지/산지
- 도로노선 확정 전에 환경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도로사업 추진시 갈등요인 발생 최소화
  - \* 노선검토·현장조사, 초기 설계자문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참여

(3)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성과평가시스템 강화

- 중장기 도로망계획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이외 개별사업별 타당성도 명확하게 제시
- 장기간 사업지연 등 기존 계획 추진이 부적합한 경우, 사업규모 축소·중단 등 도로사업 조정
  - \* 신규사업 채택 후 10년간 미착수된 사업,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사업 재검토
- 도로사업 완공 이후 제3의 전문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시행토록 하여 사후평가의 신뢰성 확보

(4) 광역적 도로교통 수요에 대응한 협력체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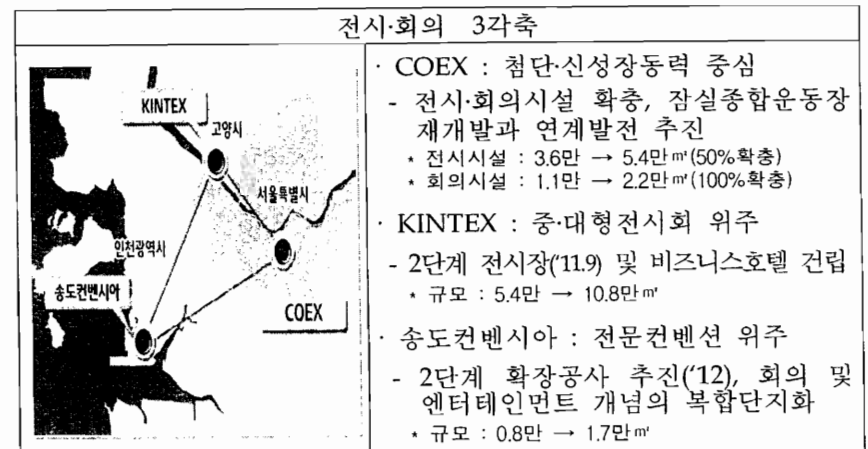
-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공사, 유지관리 등 집행기능을 공기업, 민간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
- 수도권 및 광역권의 도로,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와 지역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-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

□ 두 번째 안건으로 「전시·회의산업 발전 방안」에 대해 논의

- 전시·회의는 무역 활성화, 내수진작, 일자리 창출, 관광수지 개선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
- 우리나라의 전시·회의산업은 COEX 건립('88) 이후 전국에 12개의 전시·회의 시설을 보유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
  - 그러나, 내국인 위주 전시산업으로 무역 및 관광 활성화 기능 부족, 대규모 시설 부족 등 상해, 싱가포르 등 인근 도시에 비해 경쟁력 부족
- 이번 국경위에서는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시·회의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

(1) 동북아 전시·회의 중심축 구축

- 전시·회의 수요 충족을 위해 전시·회의시설을 확충하고, 글로벌 Top 수준의 전시·회의를 유치하여 동북아 전시·회의산업 중심축으로 육성
  - '16년까지 전시시설 11 → 20만m<sup>2</sup>, 회의시설 2 → 6만m<sup>2</sup>으로 확충
  - 「코엑스(서울)-킨텍스(경기)-송도컨벤시아(인천)」를 잇는 전시·회의 3각축 구축
  - \* 코엑스는 사이버전시시스템 구축 등 첨단 전시·회의시설, 킨텍스는 중대형 전시회, 송도컨벤시아는 회의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단지로 구성



**(2) 글로벌 수준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육성**

- 대규모·글로벌 수준의 전시·국제회의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
  - 각각 8개, 9개를 선정, 건당 1억원씩 지원하는 ‘글로벌 TOP 전시회’ 및 ‘Star 컨벤션’은 ‘12년까지 3개씩만 선정하고 지원은 확대(건당 3억원)
- 전시·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국가적 통합마케팅 시행 및 바이어 유치 강화
  - \* 전시·회의 육성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
  - \* KOTRA 및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중 일부(30개, 9개)를 공동마케팅 중핵거점화

**(3) 국내 산업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**

- 전시와 장날개념을 접목하여 상거래와 관광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전시·회의와 연계된 계절별·테마별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

< 전시와 관광의 연계 >

구분	주요내용
동대문시장	Seoul Collection 등 섬유·패션 전시회와 연계
남대문시장	생활용품전 등을 서울광장에서 개최(‘11~15)
이태원	여행·음식 등 국가별 특별 이벤트 개최
용산전자상가	전자IT와 전시회를 병행하여 용산전자상가 특별판매장터 개설

< 계절별·테마별 관광프로그램 >

구분	주요내용	
계절별	봄	섬유패션전(동대문) → 벚꽃축제 등과 연계
	여름	여행관광전(이태원) → 해양스포츠·머드축제
	가을	생활용품전(남대문) → 단풍관광·트레킹
	겨울	스포츠전·세미콘코리아와 스키장·눈꽃축제 연계
테마별	의료	피부과학회·의료기기전과 의료관광 연계
	생태	기후변화총회·물 포럼과 갯벌·DMZ관광 연계
	韓食	식품산업전과 궁중음식·막걸리축제 연계

**(4) 유희 시설 활용 및 지역발전과 연계**

- 지방의 유희 전시·회의 공간은 소상공인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시·회의와 지역특화산업 및 관광을 연계하는 발전전략 수립·추진

< 지역별 발전전략 >

구분	비전 및 특화분야	관광연계 전략
부산	BEXCO	조선·철도·물류
대구	EXCO	태양광 신재생에너지
광주	KDJ	광산업과 문화컨텐츠
대전	DCC	국방·과학 첨단분야
창원	CECO	산업과 환경의 조화
제주	ICC	비즈니스·휴양 복합도시

**(5)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활용**

- IT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회의장 운용 등으로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위상 제고
  -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형 국제회의 개최 및 유치 추진

< 향후 5년간 유치개최 예정 대형 국제 회의(\*는 유치추진중) >

구분	국제회의(예상 참석인원 : 만명)
정치 경제	▷ ‘12년 핵안보 정상회의
	▷ ‘13년 ITU세계대회(8),
환경 과학	▷ ‘11년 아시아패션연합회 총회(1.5)
	▷ ‘14년 세계항공물류포럼(5천명)
보건 의료	▷ ‘12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*(1.5)
	▷ ‘12년 IWA세계물총회*(1.2)
사 회	▷ ‘15년 세계물포럼(3)
	▷ ‘15년 응용화학국제연맹회의(5천명)
사 회	▷ ‘11년 세계피부과학회(2)
	▷ ‘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(2)
사 회	▷ ‘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(2만명)
	▷ ‘12년 라이온스세계대회(6)
사 회	▷ ‘13년 한국청년회의소아태대회*(2)
	▷ ‘16년 세계로타리대회(5.7만명)

**(6) 제도개선 및 지원체제 효율화**

- 이원화된 전시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지원체제 효율화
  - 현재 ‘전시산업발전법(지경부)’과 ‘국제회의산업육성법(문화부)’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일원화
    - \* 통합법률(안) : (목적) 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 및 산업간 연계강화, (주요내용) 전시 및 회의산업 육성 기본정책 수립, 관련 시설 건립 심의 등
- 그밖에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, 전시·회의 시설 인근의 관련시설 집적화를 위한 MICE\* 복합지구 지정·운영 등
  - \* MICE(회의·인센티브투어·컨벤션·전시) : Meeting, Incentive, Convention, Exhibition

□ 세번째 안건인 「제10차 기업현장으로 개선 활동」에서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회가 공동운영하는 **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**('08.4월 설치)의 기업 현장으로 개선성과를 보고

○ 4~6월중, **11개 지역현장방문과 22회에 걸친 업종별간담회**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

- \* 지역현장방문 : 부산, 광주, 울산, 구미, 안동, 익산 등 11개 지역
- \* 업종별 간담회 : 신재생에너지, 정보통신, 정유, 관광호텔업 등 22회

- 이번에는 85건을 검토하여 **72건의 개선내용(수용률 84.7%)**을 보고

○ 10차 기업현장으로 개선 활동의 주된 개선성과를 보면

### ① 입지관련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개선

-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 및 연수시설의 증설 허용범위 확대
  - \* (기존공장) 첨단·도시형공장(1천~3천㎡ 이내) 등 → 증설면적 확대 등
  - \* (연수시설) '94년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에 대해서도 10% 이내 증축 허용
-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한을 **명문화(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)**하고 송전탑 설치를 위한 **자재운반방법의 선정기준 마련**
  - \* 심사기간 제한이 없어 기업의 사업지연 요인
  - \* 임도가 개설된 경우에도 진입도 대신 헬기이용을 요구해 기업부담 가중 사례 발생
- 지구단위계획 **배정물량 조정범위(기존 30% 이내)**를 확대하고 자체 기반시설을 갖춘 **대규모 단일공장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면제**
  - \* 현재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도 일정면적(3만㎡)이상 개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→ 기업의 시간·비용 부담 증가

### ② 친환경산업의 환경규제 합리화

- 자연방출되는 매립가스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등 배출시설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**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선**
  - \* 현재는 바이오가스발전도 화석에너지발전시설과 동일한 배출기준 적용
- **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**

### ③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방법의 현실화

- 공공 공사에 있어 예산배정 지연 등 발주자 귀책사유로 **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**
  - \* 지급기준 미비로 간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체 부담 증가
- 공공건설공사의 원가산정시 실소요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**품질관리비 현실화**를 위해 **품질관리자 인건비 추가**

### ④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세 및 회계관련 제도 개선

- **동일회사내 사업장간 유류이관시 세금선납의 부담 및 사업장간 유류시설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소비세 납부 개선방안 검토**
  - \* 세금선납에 따른 금융비용 우려로 유류이관 자제 → 공장간 최적 활용 저해(S사)
- 현행기준 재무재표와 국제회계기준 재무재표를 이중 작성하는 **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의 부담최소화**를 위한 세법 개정 추진

### 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및 고용관련 애로 해소

- 핵심공정이 아닌 도장을 위한 '분체도장설비'까지 직접 갖추도록 한 **밸브조달제품 관련 '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' 완화**
-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조달청 등급제한 공사의 **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**(당해 공사규모 1.2~2배 → 1~1.5배)
-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**감원방지 대상 근로자 범위 완화**

### ⑥ 주유취급소 영업 애로 등 업종애로 해소

- 주유취급소내 **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** 및 주유취급소 방화담의 **방화성유리 허용범위를 확대**하는 등 다양한 업종애로 해소

### ⑦ 지역현안 해결

-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개선(의정부), 공장에 대한 존치 부담금 재산정(파주), 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조정(남양주) 등 **다수의 지역현안·애로 해소**

○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·규모·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으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

## 【 도로사업 효율화방안 】

### 중복·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도로사업 효율화

- 모든 도로가 중복투자 없이 이어지도록 스마트한 계획 수립
- 자연경관 및 지역 생활권 보호를 위해 유연하게 도로설계
- 「계획-착공-완공」의 사업단계별 타당성 검증시스템 강화
- 효율적 교통·물류정책을 위한 정부-지자체 협력체계 강화

#### 1. 추진배경

- 1] 중복·과잉투자로 인한 과도한 도로시설 확충 및 예산낭비요인 개선을 위해 도로투자 효율화 필요
  - 불요불급한 도로투자로 인해 국가교통망의 종합·조정이 미흡하고 도로 투자의 중복, 과잉 문제 지속
    - \* '10년 설계·건설 중인 2,821km 중 21%(580km)는 국회에서 반영(총사업비 3.9조원)
  - 도로 등에 대한 과도한 공공투자로 유지보수, 관리 등의 고정적 사후관리비용 역시 지속 증가하여 재정부담 증대
    - \* 도로 유지보수비 41.1% 증가 : 17,607억원('00) → 20,240억원('09)
- 2] 효율적인 도로 투자를 위해 도로 계획간 연계, 설계기준 유연화, 사업평가 체계화, 관리체계 선진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안 마련

#### 2. 현황 및 문제점

##### 1] 도로시설 및 투자 현황

- 도로시설의 외형적 규모가 급격히 증가 : 도로 총연장, '00년 151,250km → '09년말 164,785km (8.9% 증)
  - \* 고속국도는 77.2% 증가(2,131→3,776km), 일반국도는 11.3% 증가(12,413→13,819km)

- '00~'09년간 도로연장의 평균증가율은 2.0%(농어촌도로 제외)로, 우리나라 도로밀도는 60개국 중 24위 수준('10.5, 국제경영개발원)

- 정부 재원, 지자체 부담, 민간투자 등을 총망라한 도로전체 투자 규모는 '09년 22.9조원 수준, '00년(14.8조원) 대비 55% 증가

- 정부 재원은 '00년도 9.7조원에서 '06년도 8.4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, '0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

\* 정부재원(교통+광투+교부세) : 97,251('00) → 84,803('06) → 117,626억원('09)

##### 2] 문제점

- [사업 계획간 연계성 부족] 고속국도, 국도, 지방도 등 사업 계획간 상호연계 없이 유사 구간에 건설되어 과다투자 논란 발생

- 중복투자 심사 등을 위해 「도로정책심의회」를 운영('07부터, 국토부) 하고 있으나 서면회의 방식 운영 등 실질적 조정기능 미흡

- [용량확장·고규격 사업방식] 지형상 기존 도로를 이용한 단순 확장이 가능함에도 우회노선을 통해 직선화, 입체화 등 고규격화

- 도로노선 결정시 친환경 도로건설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→ 경관훼손 및 생활권 단절

- [타당성 및 평가체계 미흡] 교통량 수요조사의 정확성 부족으로 국도 확장 이후 실교통량이 예측치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구간 상존

- 도로계획 및 착수 이후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재평가 없이 사업이 순연되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도 다수

\* 2차 5개년 투자계획('06~'10)대상 사업중 미착공 사업 44%

- [도로관리체계 분산·연계 미흡] 광역권내의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사업, 교통수요관리 등 통합적 관리역량 부족

- 폭설, 수해 등 재해재난 시 장비 공유, 협력 작업 등이 어렵고 도로별 연결·접속구간의 경우 관리기관마다 유지관리 상이

### 3. 도로사업 효율화방안

#### 1 도로계획과 다른 계획간의 정합성 제고

- **[공간 및 종합계획과 연계]**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관리의 근간이 되는 공간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종합계획과 도로계획간 연계 강화
  - 공간·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국토·공간계획, 교통·물류정책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로망 설치 추진
- **[교통수단간 연계]** 도로, 철도 등 교통수단별 투자계획간 시행시기, 우선순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교통수단별 투자계획 조정 강화
  - 도로를 포함한 교통수단간의 연계기능 확립을 위해서 「국가기간 교통망계획(2000~2019)」 재검토 및 보완
- **[도로기능별 연계]** 고속국도, 국도, 지방도 등 개별 도로망을 통합하여 종합계획(국가도로망계획) 수립
  - \* 국가도로망계획(신설, 20년) → 도로정비기본계획(10년) → 중기 투자계획(5년)
- **[도로사업 조정]** 도로사업간 통합조정 및 사전 협의 강화
  - 민간제안방식의 민자도로사업을 추진시 기존 도로망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도로망계획 또는 민자사업 수정
  - 행정경계 구간의 도로연결 방식에 대해 지자체간 이해상충 발생시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조정 기능 강화
- **[도로사업 심의기능 강화]** 도로정책심의회 의 심의절차 정례화 및 심사 대상 확대를 통해 실질적 조정기능 강화

< 도로정책심의회 기능 강화방안 >

	기존	개편안
구성	위원(20명) : 공무원, 시민단체, 전문가	도시, 환경, 인문사회 분야 참여
절차	임의 개최 (법적효력 부재)	도로계획 수립·수정시 개최 (정례화)
기능	도로노선 지정, 중복·과다투자 등	도로노선 지정, 중복·과다투자, 친환경지침, 자연사업 재평가 등

#### 2 도로사업 방식 및 시설기준 효율화

- **[단순 용량확대 지양]** 4~6차로 확장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기존도로 용량보강(선형개량, 교차로 개선 등) 등 도로 개량사업 비중 확대
  - 4차로 이상으로만 건설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교통량, 기존 도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2차로 건설이 가능토록 지침 조정
- **[도로용량 확장방식 다양화]** 효율적인 도로사업을 위해 교통수요에 따른 단계적 건설, 2+1차로제 등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
  - 교통량 예측이 4차로 교통수요에 못 미치는 경우, 2차로 우선 완공 후 교통량 변화에 따라 4차로 확장하는 단계적 건설방식 도입
    - \* 4차로 용지확보 후 선 2차로 건설 → 후 4차로 확장
  - 교통량 증가가 크지 않으나 도로용량 확충이 필요한 경우, 기존 도로시설을 활용한 도로용량 확충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
    - \* 교통량,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2+1차로제 등 도로시설기준 수립
- **[설계속도 기준 유연화]** 경관·환경·집단취락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설계속도를 신축적으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
  - ※ 도로설계속도 적용기준 세분화(예시)
    - 지형조건(지방) : 평지/산지 → 평지/구릉지/산지
    - 교차로설치 기준 : 기존 트럼펫 → 다이아몬드, 회전교차로 등 탄력적 적용
  - 지역 생활권 분리, 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, 곡선반경 등 설계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 개선
- **[친환경 및 경관도로 기준 강화]**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, 입찰절차를 통해 경관요소 반영
  - 경관이 우수한 도로에 대한 경관지표 개발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「경관도로 정비 지침」 개선
  -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 평가기준에 경관요소를 반영하고, 설계대가 기준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개선

- **[지속가능한 도로건설]** 노선 확정 전 사업초기 단계부터 경관 등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노선을 검토할 수 있도록 **환경평가 연계**

- \* 노선검토·현장조사, 초기 설계자문시 **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참여**를 참여시키고, 환경측면을 고려한 **대안노선 제시**(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활용)

- **[주민의견 수렴 확대]** 노선선정·사업시행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예방, 지역사회의 영속성 유지 등을 위해 **주민의견 수렴제도 보완**

- \* 지역주민, 환경 등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**도로사업자문위원회**」 운영
  - \* 주민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기존 도로사업 **국민참여(PI) 매뉴얼 수정·보완**

### ③ 도로사업 투자평가시스템 강화

- **[타당성 조사 강화]**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시 **개별사업별 타당성도 명확하게 제시**

- \* 그룹별·권역별 우선순위 부여로 시급성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

- **[수요예측 기초자료 보완]**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**조사기법 개선** 및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

-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중인 교통수요예측 조사의 주기를 높이고(1~2년단위 갱신), 조사대상 지구도 확대(248 → 3,500개)

- 교통량 예측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도로사업자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국가교통DB센터의 검증기능 강화

- **[자연사업 재평가제 도입]**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도로건설 추진이 부적합해진 경우, **사업 규모 축소 또는 중단 등 사업 조정**

- \* 현재는 착공이전 단계에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나, 신규사업 채택 후 10년간 미착수된 사업,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사업에도 검토

- **[완공사업 사후평가 개선]** 지정된 평가전담 기관이 완공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사후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시행착오 방지

-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사업자가 아닌 **제3의 전문기관**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**관보·인터넷 공시**

### ④ 도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

- **[도로유지관리 전문화]**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의 공사·유지관리 등 집행기능을 **전문기관에 위탁**하는 방안 검토

-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공사 위탁, 민간 위탁 등 개선방안 검토

- **[수도권 도로·교통 효율화]** 광역도로·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**국토해양부, 수도권 지자체간 협력체계** 구축

-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지자체 간 조합 형태로 운영 중인 「수도권 교통본부」에 국토해양부 참여

- 장기적으로 도로·교통관련 계획, 정책간 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총괄하고 「서울지방국토관리청», 「수도권 교통본부」 등이 포함된 수도권 **광역교통 총괄·조정기구 설치·운영** 검토

- \*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('11.6월까지)

- **[비수도권 도로·교통 통합성 제고]** 광역권의 산업(지역개발), 도로, 철도 등 **교통·물류정책을 연계**할 수 있도록 지방청,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**광역단위 도로교통정책 협의체** 구성

## 4. 기대효과

- 지역 민원성, 선심성 공약 등에 의해 추진되는 도로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통해 **불요불급한 사업 제한**

- 도로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참여, 다양한 전문가 활동 보장을 통해 **사회적 갈등 최소화**

- 도로의 양적 팽창보다는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를 통해 **CO<sub>2</sub> 배출 저감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**

- 도로의 안전성, 편리성, 환경성 등 **도로이용자 편의 제고**

【 전시·회의산업 발전 방안 】

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시·회의산업 발전추진  
 “전시·회의산업”을 무역·관광의 중심축으로 육성

- 재래시장 및 밀집상권과 전시회의 연계개최, 계절별·테마별 관광프로그램 개발
- 글로벌 TOP 전시회 및 스타 컨벤션 선정·육성
- 2012년까지 지역 전시·회의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, 300개 창업공간 마련
-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의 일원화, MICE복합지구 도입
- 2015년까지 전시회를 통한 수출창출 600억불/년, 국제회의 참가자 100만명/년 달성

1. 추진배경

- 전시·회의 등 MICE산업은 전후방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
  - 국내전시회의 수출 창출효과는 연간 약 230억불 수준이며, 국내 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중 52.4%가 전시회 참가
    - \* MICE : Meeting(회의), Incentive(보상관광), Convention(컨벤션), Exhibition (전시회)
  - MICE산업은 종사인력 12.3만명('09년), 전시산업 매출 10억원당 18.5명의 고용을 유발('07)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
    - \* 고용유발 효과 : 일반기계 12.6명, 금융·보험 11.5명, 전기전자기기 8.5명
  - 또한, 전시·회의 산업은 무역수지 개선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주요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및 개최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
    - \* 국내 개최 국제회의 참가자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2,488달러(일반관광객의 1.95배)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도가 높음
-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국내 전시·회의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

2. 현황 및 문제점

- ① [무역·관광활성화 기능 부족] 전문전시회(Trade Show, B2B) 보다는 일반 전시회(Public Show, B2C) 위주로 전시·회의의 무역·관광활성화 기능 부족
  - 일반전시회 위주인 국내 전시회에 해외업체 및 바이어 참가 부족
  - 전시회 참가자 중 섬유(동대문)·전자(용산)·보석(종로) 등 해당품목 밀집 상업지역 방문도 저조하여 소비 및 교역 유발 효과 부족
- ② [인프라 부족 및 수급 불균형] 대규모 전시·회의시설(10만㎡ 이상)은 전무하고, 교역규모 대비 전시장 면적비율은 2.6%에 불과
  - \* 10만㎡ 이상 대형전시장 수 : 미국 6개, 중국 3개, 독일 9개, 한국 0개

< 전시장 면적과 교역규모 비교('08) >

구 분	미국	중국	프랑스	독일	싱가포르	한국
전시장면적(천㎡)	6,359	3,509	1,600	3,113	163	178
교역량(억불)	29,500	23,770	13,132	26,699	5,172	6,864
면적/교역량 비율	21.5%	14.8%	12.2%	11.6%	3.2%	2.6%

- 서울은 상해·싱가폴 등 경쟁도시에 비해 규모 경쟁력 취약
  - \* 전시장 면적(㎡) : 서울(51,400), 상해(189,200), 싱가포르(122,600)
  - \* 회의장 면적(㎡) : Coex(11,000), 베네시안 마카오(25,000), 싱가포르 섀텍시티(21,200)
- 지방 전시장들은 가동률 제고를 위해 유사·중복 전시회를 양산하여, 기업의 참가부담 가중 및 전시회의 대형화·국제화 추진에 장애
- ③ [마케팅 역량취약] 대다수 국내 전시업체가 종업원 5인 내외, 매출액 7억원 수준으로 영세하여 대형·국제 전시회 수행 역량 미흡
  - 공공·민간의 개별적인 해외 마케팅 등 협력체계도 미흡
- ④ [지원체계의 비효율성] 지원체계 이원화 및 높은 규제·낮은 지원으로 전시·회의시설 운영적자 지속
  - 전시산업은 지식경제부, 국제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
  - 전시장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미흡, 우수 전시회 및 국제회의의 국내유치·개최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 등

### 3. 전시·회의산업 발전방안

#### (1) 동북아 전시·회의 중심축 구축 : COEX(서울), KINTEX(경기), 송도 컨벤시아(인천)를 잇는 전시·회의 3각축 구축

-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되고 보완적인 발전전략 추진

구분	강점요소	중점기능	지리적 위치
COEX	외국 바이어 선호 주변여건, 인프라우수	첨단, 신성장동력 전시 + 회의 + 쇼핑·문화	
KINTEX	대형 전시시설 보유	기계류 등 산업재 위주 전시	
송도컨벤시아	新복합단지, 접근성	소형 전시·회의 개최	

- 수도권 집중된 전시·회의 수요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
  - '16년까지 전시장은 11만 → 20만㎡, 회의실은 2만 → 6만㎡로 확대

#### (2) 국가브랜드 전시·국제회의 육성

##### [1] 국제수준의 전시·회의 육성 ('12)

- 글로벌화가 가능한 전시회(전시면적 5만㎡이상) 중 3개를 「글로벌 TOP 전시회」로 선정('12)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
  - 지원내용 : ('10) 8개, 건당 1억원 → ('12) 3개, 건당 3억원 이상
- 대형화가 가능한 국제회의(외국인 1천명 이상 참석) 중 3개를 「Star 컨벤션」으로 선정('12)하여 대표브랜드로 육성
  - 지원내용 : ('10) 9개, 건당 1억원 → ('12) 3개, 건당 3억원 이상
- '한국 전시·회의 대상'을 신설, 무역·관광 창출효과 기준으로 매년 11월경 우수업체 및 공로자 포상

##### [2] 전시·회의 융합화 및 대형화 추진

-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시회와 회의의 동반개최 유도
  - 일정 규모\* 이상의 전시회와 회의 동반 개최시 자금지원 우대
    - \* 전시회 2만㎡ 이상, 회의 1천명 이상 참석
- 유사 전시회 통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

##### [3] 전시·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해외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

- '전시·회의 육성협의회' 중심으로 각종 전시·회의 관련 해외 마케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, 유관기관이 협력적인 해외마케팅 추진
  - KOTRA-관광공사 등 지원기관간 업무협약(MOU) 체결 및 협의체 구성
- KOTRA의 30개 KBC(Korea Business Center)와 관광공사의 9개 해외 지사를 전시·회의 중핵거점으로 지정·운영
  - 글로벌 TOP전시회는 KOTRA가 해외마케팅을 전담, 유치 효율성 제고

#### (3) 국내산업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 강화 : 상거래와 관광 연계 (전시와 장날개념 접목)

- 섬유, 패션 전시회를 동대문시장에 집중 개최하고, 전시회 참가 바이어와 비즈니스를 확대
  - \* 서울 컬렉션(SETEC), Preview in Seoul(COEX) 등 한국의 대표적 패션전시회 개최 장소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(DDP)로 이전('12)
- 다문화거리인 이태원 지역을 세계문화교류 장터로 육성하고, 관광산업 활성화에 활용
  - \* 세계음식축제 개최하여 이색음식점 거리장터를 조성하고, 내나라 여행박람회의 길거리 홍보구역으로 활용
- 대규모 생활용품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여 남대문시장 활성화
  - \* 생활용품전시회를 남대문시장과 연계하여 서울광장 야외전시회로 개최 ('11~'15년)하고, 장기적으로는 (구)서울驛舍 전시장 활용
  - \*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('11, 서울시)

- 한국전자전과 연계한 용산전자상가 신상품장터를 개설
  - 용산터미널 전자상가를 활용하여 한국전자전 기간('11월, KINTEX) 중 전시회 참관객을 위한 장터 조성

**[4] 지역 전시·회의시설의 활용 극대화 : 유휴 공간의 활용 극대화 및 지역별 특화된 발전전략 수립**

- 유휴 전시·회의 공간을 소상공인 창업공간으로 활용
  - 2011년 상반기 중 시범실시(50개)후 2012년까지 300개로 확대 추진
- 지역특화 산업 및 관광과 연계된 발전전략 수립·추진
  - 부산 : 철도·물류관련 대형 전시회와 해양관광("부산자갈치 시장")의 연계
  - 대구 : 풍력 등 그린에너지와 한방("약령시") 관광과의 연계
  - 광주 :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콘텐츠·음식문화와의 연계
  - 대전 : 국방, 과학, 벤처산업 등과 사적("백제역사관광")의 연계
  - 창원 :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린산업 중심도시
  - 제주 :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·휴양 복합도시 육성

**[5]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활용 : 최첨단 회의장 운용 등 국제회의 선진국 이미지 부각**

- IT·방송·통신시스템·디스플레이 시스템 등을 활용한 회의장 조성
  -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, 실시간 정상회의 중계 및 정보 제공
  - 회의장내 3D TV 전시, 대표단 스마트폰 사용 지원 등 홍보 강화

**[6] 제도개선 및 지원체제 효율화**

**[1] 전시·회의산업 전담 행정·지원체제 효율화**

- 이원화된 법률체계를 단일 법률로 통합 추진
  -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전시·회의 관련 행정규제 완화 및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 추진

< 전시·회의 관련 법률 통합 개편(안) >

구분	국제회의 육성법	전시산업 발전법	단일화 법안
목적	· 국제회의 산업 육성 및 관련산업 발전	·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진흥	· 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 및 산업간 연계 강화
내용	·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정책 수립 · 국제회의 유치·개최 지원	·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· 전시시설(2천㎡이상) 건립 심의 및 지원	· 전시 및 회의산업 육성 기본정책 수립, 관련 시설 건립 심의 등

**[2] 중저가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**

- 오피스텔의 비즈니스호텔로 전환 지원
  - 기존 오피스텔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**비즈니스호텔(관광호텔)**로 전환시, 리모델링 비용 용자조건 완화
- 여관·모텔 등의 중저가호텔로 전환 지원
  - 여관·모텔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을 중저가호텔로 전환시,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금리 및 대여기간 우대방안 강구
- 초특급호텔(6~7성급) 투자유치 및 우수 숙박시설(굿스테이·이노스텔)의 확대 및 홍보 강화

**4. 기대효과**

- 무역·관광진흥 등을 통한 동북아 전시·회의산업의 중심국가로 도약
  - 수출 창출 : ('09) 230억불 → ('15) 600억불
  - 국제회의 유치 : ('09) 56만명 → ('15) 100만명

【 제10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 활동 보고 】

“똑똑한 기업이 찾는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”

-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공장 및 연수시설 증설 허용
-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지원 합리화
- 주유취급소내 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

**1. 현장애로 파악 및 개선 활동**

① [현장애로 파악] '10.4~6월중 지역현장방문(8회), 서울지역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 간담회(3회) 등을 통해 기업현장 애로를 파악

<지역현장 간담회 주요건의사항>

◆ 경북 구미 (4.20)	◦ 해평 농공단지의 국가산단 편입, 산단내 원형보존지 개발기준 완화, 지역 인력양성기관 건립 등
◆ 전북 익산 (4.28)	◦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체계 일원화, 주류 판매장별 용도구분 표시 폐지, 지역난방업체 대상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연장 등
◆ 광주광역시 (4.28)	◦ 지역 대표기업 경영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보완책 마련, 매일유업 공장 증설 조속 허용, 매일종합상가 입점허가 업종 확대 등
◆ 경북 안동 (5.4)	◦ 지역 건설업체 진입장벽 제거(최저가입찰 보증서발급 완화, 시공참여자 제도 재도입 등), 주유소관련 규제 완화, 농공단지고용인력 보조 등
◆ 부산광역시 (5.7)	◦ 기부채납한 공장건물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, 폐기물부담금 산출 금액 기준 인하,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
◆ 경남 진주 (5.10)	◦ 지방산업단지·경남혁신도시 분양가 인하, 하도급업체 납품단가인하 개선대책 마련, 산업단지내 공장소음배출기준 완화 등
◆ 하남·광주 (5.17)	◦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기업 이주대책 마련,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개선 등 지역특성적인 입지 및 환경관련 현안 해소 요구
◆ 울산광역시 (6.9)	◦ 장생포공원에정지역의 공장용지 개발, 산재발생 보고대상 변경,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

<서울지역 소상공인 주요건의사항>

◆ 구로구 (3.30)	◦ 구로 디지털산단내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, 가리봉지구 아파트 건립시 근로자 우선 분양 등 산단 배후지원시설 확대
◆ 서초구 (4.22)	◦ 고령 근로자의 최저임금 탄력적용 및 고용촉진장려금지원제도 개선, 부가세 납부시기 조정 등
◆ 강남구 (4.26)	◦ 강남대로변 기업 주·정차단속 개선,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신설, 원료 의약품 제조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개선 등

② [업종] 업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애로 발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, IT 서비스, 정유업종 등 업종별 간담회 개최(22회)

<주요건의사항>

신재생 에너지	◦ 풍력발전단지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
정보통신	◦ 기간통신사업자의 검열제한 완화 등
IT 서비스	◦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
관광호텔	◦ 관광호텔과 의료기관간 연계상품 구성 허용 등
정 유	◦ 생산 LPG의 수입부과금 환급 등
자동차	◦ 시험·연구용 취득자동차의 세제혜택 범위 확대 등
기 타	◦ 중수도 사용 감면을 인상(디스플레이), 매출세금계산서상 업종분류 개선 (전시), 도시광산기업의 재활용 규제 완화(비철금속) 등

③ [경제단체] 경제단체가 회원사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검토

<주요건의사항>

무역협회	◦ 중소기업 플랜트 수출에 대한 보증 확대 ◦ 수출화물 선복 확보난 해소 지원 등
경 총	◦ 의원입법관련 규제영향평가 및 대응시스템 마련 ◦ 안전검사 수수료 기준 개선 등
중기중앙회	◦ 식품과 의약품 규제수준 차별화 ◦ 폐수배출시설 제외관련 규제 완화 등
기 타	◦ 3D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◦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원활화 등

④ [현장애로개선 협의결과] '10.4~6월중 검토대상 과제중 총 85건에 대한 부처협의 완료

- 부처협의 완료과제중 72건 개선(수용률 84.7%)
- 분야별로는 입지 17건, 업종애로 13건, 중소기업 12건, 주택건설 11건, 조세회계 7건, 환경 7건, 지역현안 5건

## 2. 제10차 기업현장으로 개선 주요 내용

### 1. 입지 및 인허가관련 규제 완화

#### ①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

**【현황】** 첨단업종인 기존공장의 경우 증설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인 면적규제로 증설 제한

- \*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공장, 도시형공장 등에 한해 건축면적 1천㎡~3천㎡ 이내에서 신증설 허용

- 용인시에 소재한 J사는 '71년 입지한 첨단업종의 제약회사로 현행 수질법상 허용기준보다 낮게 배출하고 있으나 자연보전권역내 공장면적 규제로 지난 30여년간 증설이 불가  
 · 특히 2012년 시행예정인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(GMP)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(7,290㎡)이 필수적이거나 공장건축면적 제한으로 증축이 불가능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에 장애

**【개선】** 기존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 완화

#### ② 자연보전권역내 연수시설 증축 허용

**【현황】**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교육형태의 변화를 반영해 강의장 및 숙소를 확충하고자 하나, 자연보전권역내에 위치한 관계로 증축 규제

- \*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 소재한 연수시설은 '94년 4월 이전에 입지한 시설에 한해 연면적의 10%내에서 증축 허용

-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'97년에 설립되어 일체의 증축이 불가능

**【개선】** '94년 4월 이후에 설치된 연수시설에 대해서도 10%내에서 증축 허용

#### ③ 산지전용허가 심사기한 명문화

**【현황】**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청장이 현지조사 등 적합여부 심사후 허가하고 있으나 심사기한 제한이 없어 기업의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

- \* 산지전용허가대상사업 28개중 15개가 3개월 이상 소요(한국전력)

**【개선】** 산지전용허가 심사기한을 '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'로 명문화

#### ④ 송전탑 설치를 위한 진입로 허가기준 마련

**【현황】** 송전탑 설치시 자재운반방법 선정기준이 없어 허가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인근까지 임도가 개설된 경우에도 진입로 대신 헬기이용을 요구해 기업부담 가중

- '07년 착공된 신양양-인제간 송전선 건설사업의 경우 126개 송전탑 중 23개만 헬기로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산림청의 요구로 82개를 헬기로 운반  
 → 진입로 대신 헬기를 이용함으로써 6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

- \* 송전탑 1기당 평균 운반비용 : 헬기 128백만원, 진입로 19백만원

**【개선】** 진입로 개설 등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자재운반방법 선정기준 마련

#### ⑤ 산지전용 허가대상 축소

**【현황】**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3만㎡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에서, 공사용 진입로 등 일시 사용후 복구되는 부분까지 허가면적에 포함되어 풍력발전단지 건설 등에 애로

-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라 설비규모가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2012년부터 총 발전량의 2%를 태양광·풍력·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 
 →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을 추진 중이나 허가면적 제한으로 필요한 풍력발전단지 개발 애로

**【개선】** 지목변경 없이 설치되는 안전시설과 진입로 등 일시사용 후 복구되는 부분은 산지전용 허가대상에서 제외

#### ⑥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완화 및 배정물량 조정범위 확대

**【현황】** 일정면적(관리지역 : 3만㎡) 이상의 개발행위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, 지구단위계획 물량은 30%범위내로 제한

- 대규모 공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시간 및 비용 부담
-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물량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공장 신증설 제약 요인

**【개선】** 자체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일공장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의무 면제 및 배정물량 조정범위 확대

## ⑦ 토지수용 및 사용에 관한 재결 관할의 변경

**【현황】** 전력사업을 위한 토지수용·사용의 재결은 사업규모에 따라 중앙과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로 이원화

\* 전압 345kV이상의 송전선로, 출력 100kW이상의 발전소 등은 중앙, 그 이하는 지방관할

- 자치단체에 따라서 재결신청 보류 및 지연 사례 발생

**【개선】** 전력사업의 토지수용 재결 관할을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일원화

## ⑧ 전원(電源)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인·허가 의제범위 확대

**【현황】** 전원개발촉진법상 발전소 건설의 실시계획을 받은 때에는 개발행위의 허가, 하천 및 도로점용 허가 등 여러 인·허가 사항은 의제처리

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, 항만기본계획 수립·변경은 의제되지 않아 별도절차 추진으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

\*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약 2년 소요

**【개선】**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사항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및 항만기본계획 수립·변경사항 추가

## ② 환경규제 합리화

###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개선방안 마련

**【현황】**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의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발전시설과 동일한 배출기준 적용

- A사는 김포매립장에서 자연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·이용하는 발전용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운영
- 폐기물 매립지에서 자연 방출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가스를 자연상태로 방출하는 것보다 포집·이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고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소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
- 타 발전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전체 사업 투자비의 약 10%의 비용부담 발생

**【개선】** 배출시설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개선방안 마련

### ② 특정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부여

**【현황】** 특정대기유해물질(HAPs)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나, 참여기업은 고가의 HAPs 저감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

\* HAPs(Hazardous Air Pollutants, 특정대기유해물질) :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벤젠, 포름알데히드, 카드뮴 등 건강유해물질

**【개선】**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기업 부담 완화

### ③ 바이오가스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 수립

**【현황】**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자에게 구입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는 반면, 동일한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에 대한 지원 규정은 부재

**【개선】** 바이오가스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 수립

## ③ 주택 및 건설관련 부담 완화

### ①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지급 기준 개선

**【현황】** 공공공사에 있어 예산배정 지연 등 발주자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증가된 간접비 지급기준 미비로 비용 미지급 사례 다수 발생

**【개선】**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

###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현실화

**【현황】** 공공건설공사의 원가산정시 품질관리비 내역에 품질관리자 인건비는 제외되어 공사원가가 실소요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

\* 품질관리 실소요비용은 공사비의 약 1% 수준이나 실제 계상되는 품질관리비는 약 0.2% 수준

**【개선】**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추가

### ③ 도시개발구역 제안 수용여부 통보기한 단축

**【현황】**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접수시 시장등은 수용여부를 3개월 이내에 회신 → 통보기간이 길어 제안자의 금융부담 증가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

· 유사법령상 통보의무 :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여부 통보 60일 이내,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제안 반영여부 통보 60일 이내

**【개선】** 제안수용여부 회신기간 단축(90일 이내 → 60일 이내)

### ④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관련 기일 단축

**【현황】** 시도지사는 감리자 지정신청관련 서류접수시 신청내용에 대해 5일 이상 열람·이의신청 접수,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·통보

· 열람·이의신청 기간이 길고(5일이상) 사실여부 확인기한 제한이 없어 공사착공 및 분양승인 지연

**【개선】** 열람 및 이의신청 기한을 단축하고, 사실여부 확인 기한을 명문화

### ⑤ 지중관로 매설깊이 기준 완화

**【현황】** 전기관 등을 도로에 매설시 1.2m이상 매설토록 의무화

· 주요국에 비해 매설기준이 엄격하고 이로 인한 굴착비용 증가 및 교통 혼잡 장기화

· 주요국 전기관 매설 깊이(m) : 미국 0.9, 프랑스 0.8, 영국 0.6, 일본 0.9

**【개선】** 지중관로 매설깊이 개선방안 마련

## ④ 조세 및 회계관련 제도 개선

### ① 동일회사 사업장간 유류 이관시 개별소비세 납부 개선

**【현황】** 개별소비세는 사업장에서 과세물품 반출시 신고·납부토록 하여 동일회사내 한공장의 유류를 타 공장으로 이관시에도 부과

· 세금선납의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유류이관이 자제되고 사업장간의 최적 활용을 저해

- 정유업체 S사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인천 정유공장으로 유류 이관시 개별소비세를 선납하고 인천 공장에 입고 후 다시 반출하는 시점에 해당 유류에 대한 세액을 공제  
· 개별소비세 선납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우려 및 세액 공제를 위한 유류추적 등의 행정부담 이유로 사업장간 유류 이관 자제

**【개선】** 동일회사내 사업장간 유류이관시 개별소비세 납부 개선방안 검토

### ②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범위 명확화

**【현황】** '11년 국제회계기준(IFRS)적용 의무화에 대비, '09년부터 국제회계 기준 적용대상기업(1,900개사)에 대해 조기도입을 허용

· 조기도입기업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('11.3월)시 국제회계 기준 재무제표와 현행기준(K-GAPP)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

**【개선】**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'10년 세제개편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법 개정 추진

### ③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본점 총괄 신고·납부

**【현황】**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별로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개별 신고·납부

**【개선】** 본사 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고·납부하면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로 자동 배분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

### ④ 석유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환급신청 증빙서류 간소화

**【현황】** 항공기·외항선박 등에 공급한 과세물품(석유 등)의 세금환급을 위해서는 대상물품확인서를 일일이 복사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

**【개선】**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증빙서류 간소화

### ⑤ 시험·연구용 자동차의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

· **【현황】** 자사생산자동차를 부설연구소에서 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시 비과세되나, 연구소 없는 생산업체가 외부연구소에 위탁시험할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

**【개선】** 부설연구소가 없는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를 제3의 연구소에 위탁하여 시험·연구·검사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비과세 검토

## ⑤ 중소기업 지원

### ① 밸브 조달등록시 필요한 중소기업 직접 생산시설 기준의 완화

**【현황】**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할 경우 제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

- 핵심공정이 아닌 도장을 위해 '분체도장설비'를 공장 내에 직접 설치해야 하므로 비용부담 증가 및 설치 공간 확보에 애로

- 남양주 소재 밸브제조업체 D사는 밸브의 조달등록을 위해서 공장 내에 '분체도장설비'를 직접 설치해야 함. 그러나 해당지자체에서 설치허가를 받기 어려우며, 다른 지역에 설치하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.

**【개선】** 타당성 검토 후 '중소기업자 직접생산 확인기준'의 개정 추진 (분체도장설비를 '소프트실 제수밸브'의 직접 생산시설 기준에서 제외)

### ②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

**【현황】**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의 만점 기준이 높아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

- \* 등급제한 : 건설업체를 시공능력에 따라 1~6등급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 부여
- \* 시공경험평가 만점 기준 : 당해 공사규모의 1.2~2배

**【개선】**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만점기준 완화(1~1.5배)

### ③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감원방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완화

**【현황】** 대체채용 방지를 위해 설정된 감원방지기간에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장려금 미지원대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장려금 전체를 반환 → 기업에 지나친 부담

- \* 신규고용촉진장려금 :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금 일부를 지원(1인당 월30~60만원)

**【개선】** 감원방지대상 근로자 범위 완화 (감원시점 전체근로자 → 장려금 지원대상자 채용일 당시 전체근로자)

### ④ 중소기업 디자인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

**【현황】**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도 마케팅에 애로

**【개선】**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비용을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## ⑥ 업종애로 해소

### ① (석유) 주유취급소내 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

**【현황】** 주유취급소내에서 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를 금지하여 주유 고객에 대한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 미흡

- \* 미국·유럽은 허용, 일본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안전성 검토후 선별 허용

**【개선】** 주유취급소내 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

### ② (석유) 주유취급소 방화담의 방화성 유리 부착범위 확대

**【현황】** 주유취급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화담을 대체하여 방화성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 전체 담 길이의 10분의 1 이하로 설치가 제한

- 운전자 시야장애 해소 및 건물미관 개선의 실제적 효과 미흡

**【개선】**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 방화성 유리의 허용범위 확대

### ③ (석유) 비상시 예선업무(테일링) 허용선박 범위 확대

**【현황】** 예선업무중 테일링(주로 원유하역시 투입)은 예선사 파업 등 비상시 일반선박으로 수행가능 함에도, 일반선박을 이용할 수 없어 국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

\* 테일링(Tailing) : 원유 하역시 안전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미 로프 조정작업 (원유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 당겨주는 작업)

**【개선】** 파업 등 비상시에 한하여 예선작업 기준에 적합한 일반선박도 예선업무(테일링)가 가능하도록 개선

### ④ (정보통신) 정보통신공사 자체설계 허용

**【현황】** 중부발전(주) 등 한전 자회사는 정보통신공사 설계시 외주용역이 의무화 → 자체설계인력보유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용역비 부담

**【개선】** 자체설계(감리제외)를 할 수 있는 기관에 한전 자회사 등 포함

## 7 지역현안 해결

### ① (의정부)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개선

**【현황】** 용현산업단지 지정('95년)이후 경기도 조례개정('02년)으로 산업단지 중앙에 위치한 문화재(정문부 장군묘) 주변 300m 이내 공장증설 제한

**【개선】**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산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주 기업의 공장증설이 가능토록 건축행위 제한 완화

### ② (파주) 공장에 대한 존치부담금 재산정

**【현황】** 고시 제정이전('07년) 존치부담금의 경우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부과했으나 이후 산정기준 통일되어 기업부담 경감

- \* 고시제정 이전 존치부담금 계약을 체결한 J사는 고시제정이후의 산정기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

- 파주신도시 조성('03)과정에서 J사(출판인쇄업)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건축물 존치를 요청하였고, 주택공사는 J사에 존치부담금으로 91억원 부과('06년)

- \* '07년 정부 고시 이후 존치부담금은 8억원~52억원 수준

→ J사는 연간 매출액('08년)이 318억원(영업이익 25억원)으로서 차입금이 많고 순이익은 3억원에 불과하여 존치부담금 납부가 큰 부담

**【개선】** 정부 고시 이전에 주택공사가 부과한 존치부담금의 합리적 경감방안 마련

### ③ (남양주) 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조정

**【현황】** 공장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기타건축물의 20% 수준이나 일부 공장은 기타건축물로 분류되어 과도한 수도 설치 부담(E사)

\* E사 원인자부담금 : 기타건축물 분류시 5천만원, 공장으로 분류시 1천만원

**【개선】** 해당공장의 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'기타건축물'에서 '공장'으로 조정

### ④ (남양주) 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

**【현황】** 남양주시 진별리 일대(약 20만㎡)에 70여개 개별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나 오·하수관, 진입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이 부족

**【개선】** 오·하수관 설치를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공장 진·출입로 확장

## 4. 향후 계획

### 1 지역·규모·업종별로 다양한 기업현장으로 수집활동 지속

○ 지역발전 및 지방기업 성장저해요인 점검을 위한 지역현장 방문을 지속하고, 업종별 간담회 개최

- \* 지역현장 간담회 : 용인(6.25), 대구(7.6), 제주(7.7) 및 마산(7.9) 등
- \* 업종별 간담회 : 유통물류(7월), 엔지니어링(7월), 중소화학(7월) 등

○ 경제단체 등과 건의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

### 2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